

2022년도 서울형 R&D 지원사업

패션산업 융·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

「패션산업 융·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」 신규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및 컨소시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3월 28일
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
모집 개요

- 지원대상: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 (산·학·연 컨소시엄 구성 필수)
- 지원규모: 과제당 최대 2억원(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 지급)
- 지원분야: 패션과 혁신기술이 융복합된 패션산업 분야
- 지원기준: 시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5% 이내 (민간현금은 시지원금의 10% 이상, 기술료 징수형)
- 공모유형: 자유공모
- 모집기간: 2022. 3. 28. (월) ~ 5. 3. (화) 18:00 전까지(접수마감일 전 사전신청 요망)
- 신청방법: 서울R&D지원센터(<https://seoul.rmbd.kr>) 종합관리시스템 통한 온라인 접수

필수 확인 사항

- 패션 융·복합 기술개발을 통해 **사업화(상용화) 가능성**이 높은 과제 지원
-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, 과제 내용 작성 요망
- 기술사업화의 주체는 **주관기관(기업)**이어야 함
- 협력기관으로 **대학 또는 연구소 1개 이상 참여 필수, 단독참여 불가** (지역 제한 없음)
-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% 이상 필수(민간부담현금 시지원금의 10% 이상 필수)
- 규정에도 불구하고, 지원금(현금)의 70%까지 인건비 반영 가능
- 선정 후 서울시 지원금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- 과제 종료(조기 완료 포함) 후 최종 평가 결과 ‘성공’ 인 과제의 주관기관(영리)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
-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**사업비 차등(조정) 지급**
- **[붙임] 지원 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** 확인 필수
- 선정 전·후 **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**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선정취소, 협약해약, 참여 제한,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 가능
-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
1. 사업 개요

■ 사업목적

- 기존 패션산업과 혁신기술 간 융·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서울시 ‘패션산업 경쟁력 강화’ 및 ‘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’ 도모

■ 지원대상 (컨소시엄 구성 필수, 단독 지원 불가)

- 서울 소재 법인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산·학·연 컨소시엄
- 협력기관으로 1개 이상의 대학 또는 연구소 필수 (협력기관 지역 제한 없음)
 - ※ 법인 중소기업은 협력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(개인사업자 참여 불가)

예시: 주관+대학/연구소, 주관+대학+연구소, 주관+대학/연구소+기업, 주관+대학+연구소+기업 등

■ 지원규모 및 기간: 총 10억 원 (과제당 최대 2억 원/1년)

※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(조정) 지급

■ 지원분야

- 기술개발을 통한 ‘사업화 가능 과제’ 중심 지원
- 패션과 혁신 기술 융·복합을 통한 패션 분야
 - 의류(소재, 완제품), 가방, 신발, 액세서리 + 인공지능, 가상현실, 증강현실, 사물인터넷, 3D 프린팅 등 혁신 기술
-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관련 분야
 - 동대문 등 패션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스템·플랫폼 구축
 - ※ 성능·디자인·공정 단순 개선, 요소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가공 및 제조 아이템 불가

〈사업 가능 프로젝트 예시〉

- 혁신기술을 접목한 신소재 사용 의류 개발
 - 태양광 발열 신소재 원단으로 제작한 의류 개발
- 소비자 분석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의류 기획시스템 개발
 - 알고리즘 분석 통한 소비자 수요예측 및 맞춤형 제품기획 시스템 구축
- 의류 부자재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
 - ‘패션업체-부자재 시장’ 간 원활한 구매 활동 촉진을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등

2. 신청 자격

■ 주관기관의 자격

-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**서울시 내에 소재**하거나 혹은 **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**을 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**법인 중소기업**
 - ※ 본점 또는 지점(기업부설연구소)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
 - ※ 사업자등록증 상,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

■ 협력기관의 자격 (※ 지역 제한 없음)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, 국립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서울시 출연기관

■ 과제(부문)책임자의 자격

- 공통사항
 - 과제(부문)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% 이상이어야 하며, 타 지원과제(정부·지자체·사기업 등 지원과제 전부)를 포함하여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 - ※ 공통사항 미충족 시 접수 취소, 선정 이후 발견 또는 수행 도중 30% 미만으로의 변경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
- 과제책임자: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,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수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- 부문책임자: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, 전임연구원, 기업 대표·연구소장 등
 - ※ 참여기관 및 과제(부문)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(2021. 7. 1. 개정)’ 참고

참여 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제한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(붙임1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)

3. 지원 원칙 및 기준

■ 기본 원칙

- 주관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 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
 - ※ 단,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&D 지원사업의 잔여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과제 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예외
- 해당 공모사업 내, 주관기관 당 최대 1개 과제 신청 가능
- 이미 구축된 산업기반(각종 연구센터, 시설·장비 등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 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, 장비 구입·시설 구축 등 지양
-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,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
 - 인건비, 시제품·시제품 제작, 안전성·유효성 평가,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&D 자금 지원
 - ※ 사업비 편성기준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(2021. 7. 1. 개정)’ 참고
 - ※ 인건비(현금)는 현금사업비의 **최대 70% 이내**에서 편성 가능
-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음
- 협약 체결 시, 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 - 보증기간: **사업기간+6개월**(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)
 - ※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**1개월 내**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선정을 취소함

■ 지원 기준

-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 및 현물)으로 구성
 - 시지원금: 총사업비의 75% 이내
 - ※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(조정) 지급
 - 민간부담금: 총사업비의 25% 이상 부담(민간부담현금 시지원금의 10% 이상)

구분	총사업비(가)	시지원금(나)	민간부담금		
			총액(다)	현금(라)	현물(마)
구성 기준	(나)+(다)	(가)의 75% 이하	(가)의 25% 이상	(나)의 10%	(다)-(라)
(예시)	266,667,000	200,000,000	66,667,000	20,000,000	46,667,000

5.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

■ 추진절차



※ 상기 평가, 심의위원회,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 선정평가 후 1차 결과 안내,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결과 안내 예정

■ 선정기준

구 분	평가항목	배점
기술성 평가 (40)	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	15
	기술개발의 타당성	15
	기술개발 추진 능력	10
시장성 평가 (60)	사업화 능력	10
	사업화 타당성	25
	시장진입 가능성	25

■ 평가방법

○ 선정평가는 과제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·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 평가 진행

※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필요시 발표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(온라인)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(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)

※ 비대면(온라인) 평가 시,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**발표 동영상 제출**을 요청할 수 있음

6. 신청기간 및 방법

■ 신청기간 : 2022. 3. 28.(월) ~ 5. 3. (화) 18시까지

※ 마감일은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
사전신청 요망

■ 신청방법: SBA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seoul.rmbd.kr/>)을 통한 온라인 접수 (오프라인 서류제출 불필요)

〈온라인 과제 신청 절차〉

① 공고문 확인 및 과제계획서 작성

- 공고문 확인 : SBA 서울R&D지원센터 - 알림마당 - 사업공고 (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)
- 과제계획서 작성 : 신청기관 과제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과제계획서 양식을 받아 과제계획서 작성
- ※ 시스템 접수 시 사업비 입력을 통해 과제계획서 작성 내용 검산 가능

② SBA 서울R&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초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

-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,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,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진행 (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)
- ※ 과제책임자 개인 명의로 과제가 신청되므로, **개인회원**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

◆ **참여기관 등록 방법 (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):** SBA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→ 좌측 메뉴: 기관정보 → 기관조회 → 새로 입력 클릭 후 작성

③ 종합관리시스템 접수

- 과제책임자 개인아이디로 SBA 서울R&D지원센터 로그인
- SBA 서울R&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'종합관리시스템' 클릭하여 접속
-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- 2022년 패션산업 융·복합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클릭
- 기본정보, 과제분류, 참여기관, 참여자, 사업비, 우대가점 등 입력 및 내역 확인
- 첨부 파일 탭에 과제계획서 및 기타 제반 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
- ※ 제출 파일에 직인 및 서명 포함
- ※ 파일은 한 번에 10개까지 업로드 가능, [저장] 후 추가 업로드 가능(**압축파일 업로드 금지**)

④ 접수 확인

- 최종 업로드 후,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
- SBA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'과제관리' → '접수과제'에서 '접수완료' 상태 확인
- ※ **임시저장 후 최종 미제출시 접수 누락으로 간주하며, '제출하기' 후 수정 불가**

⑤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(URL: <https://forms.gle/ejFYAmkzh74wDTT8>): **과제책임자 1인** 대표로 작성

- ※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도 과제책임자가 대표로 입력
- ※ **설문조사 미참여 시 평가대상 제외, 반드시 설문조사 작성해야 함.**

○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

구분	서 식 명	대상		제출형태
		주관	협력	
계획서	과제계획서(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)	○		한글(HWP)/ 스캔(PDF) 온라인 업로드
붙임 [필수]	[붙임1]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	○	○	
	[붙임2] 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	○	○	
	[붙임3] 과제(부문)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&D기업 지원사업 현황	○	○	
	참여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(명)	○	○	
붙임 [해당시]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(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) ※ 주관기관 필수, 협력기관(영리)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	○	○ (비영리x)	
	[붙임4] 연구장비·시설 구입 계획서	○	○	
	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	○		
	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	○	○	
온라인	설문조사(주관기관 과제책임자 필수, 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)	○		제출 후 팝업/링크

7. 기술료 징수 기준

- (기술료 징수대상) 과제 종료(조기완료 포함) 후 최종평가결과 ‘성공’ 과제의 주관기관 대상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
- (기술료 징수방식) 주관기관은 「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」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
 - 정액기술료: 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시지원금에 아래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

실시기업 유형	정액기술료
중소기업	사용 시지원금의 10%
중견기업	사용 시지원금의 20%
대기업	사용 시지원금의 30%

- ※ 중소기업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을 말함
- ※ 중견기업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
- ※ 대기업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
- 경상기술료: 성과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※ 기술실시계약 체결, 기술료 징수·납부 방식, 기술료 감면·교부 등에 대한 세부 요건과 내용은 「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(2021. 7. 1.개정)」에 따름

8.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

-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- ③ 과제 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,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
-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’을 적용함(<https://seoul.rnbd.kr> → 정보마당 → 사업정보/매뉴얼/서식)
- ⑤ 본 사업 신청 완료를 위해서는 하기 링크를 통해 제공된 온라인 공통 설문조사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.
(설문URL: <https://forms.gle/ejFYAmkzh74wDTT8>)
- ⑥ 과제 선정 후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로 수행 포기 시 참여 제한 등 제재
- ⑦ [붙임] 지원 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필독
※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
■ 문의처

- 담당자 : 서울산업진흥원 R&D사업팀 남예빈 선임(rnd@sba.kr, 02-2222-3835)

※ 서울산업진흥원은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,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,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.

[붙임]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

지원 제외 대상

- ※ **참여기관, 참여기관장, 과제(부문)책임자**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- ※ 접수 마감일 전에 **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할 수** 있고,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**평가·지원 제외 및 협약 해약 조치**

① 접수서류

- 과제계획서 등 제반 서류(설문조사 포함)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미준수
-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- ※ 서울형 R&D 지원사업 **5년간 참여 제한**

② 중복성

[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기준]

- 접수 마감일 기준 서울형 R&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
- ※ 단,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&D 지원사업의 잔여 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과제 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예외

[과제 기준]

- 접수과제의 내용(기술개발 목표, 방법 등)이 타 사업·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인 경우
-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지원·제작·생산·판매 중인 제품·서비스 경우
- ※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서 개별 확인
- ※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이 된 이후에도 동 과제가 서울형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 간 과제 유사·중복성이 인정되면,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이 될 수 있음

③ 참여율

- 과제(부문)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- ※ 과제(부문)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% 이상 계상하여야 함

④ 의무사항

- 참여기관, 참여기관장, 과제(부문)책임자 등이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
지원 제외 대상

⑤ 신용 및 기업 상태

- 기업의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(체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-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※ 체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

- ㉠ 접수마감일 이전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
- 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
- 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 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

〈 지원 제외대상 예외항목 증빙서류 관련 문의처 〉

- 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
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
-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의견'인 경우
-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 - ※ 접수 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
-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(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)
 - ※ 단, 접수마감일 기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이미 행사한 경우에만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어 부채비율 재계산 가능
 - ※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치는 행사 시 기준으로 산정
-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(완전자본잠식) 기업인 경우(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외)

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우대가점 목록

가점기준 :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(최대 5점 내 중복 인정 가능)

- 주관기관이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(중복 가점 가능)(각 1점)
 - ☞ 증빙서류 : 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사회적기업확인서 (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)
- '서울형 R&D 지원사업'에서 최근 3년 이내 '성공(우수)'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(1점)
 - ☞ 증빙서류 : 서울형 R&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(결과공문: 성공(우수) 표기 과제)
-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받은 경우 (1점)
 - ☞ 증빙서류: 상장, 하이서울브랜드, 서울어워드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
- 접수마감일 기준,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(1점)
 - ☞ 증빙서류 :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-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 기술개발을 위해 신규 채용을 완료한 참여기업인 경우(1점)
 - ☞ 증빙서류 : 4대 보험 가입자명부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)
-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(2점)
 - ☞ 증빙서류 : ① 직접수출 :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
 - ② 간접수출 : 간접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
 - ※ 직·간접 수출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점 인정
-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투자 기관으로부터 1회 2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(2점)
 - ☞ 증빙서류 : 투자 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(투자금 등기 완료 내용 포함 경우)
-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('20년 대비 '21년 비교)(1점)
 - ☞ 증빙서류 : ① [종합관리시스템]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
 - ② 증빙서류: 매출감소(2개년도 재무제표 등), 인력감소(2개년도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), 계약취소 (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)
-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대응 분야(비대면, 방역 관련 기술 등)인 경우 (1점)
 - ☞ 증빙서류: [종합관리시스템]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

※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, 가점 인정 불가